

대 통 령 령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이 명 박 인

2011년 4월 30일

국 무 총 리 김 향 식

국 무 위 원
행정안전부
장 맹 형 규

●대통령령 제22910호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적성은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병력신고서(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적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질병·신체에 관한 신고서)로 판정할 수 있다.

1.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
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결과통보서
3. 「의료법」 제17조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

제45조제3항 중 “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또는 질병·신체에 관한 신고서”를 “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의 병력신고서(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질병·신체에 관한 신고서)”로, “20시간”을 “2시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2항 본문”을 “제2항제1호”로 한다.

제4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능시험은 운전면허시험관이 직접 채점할 수 있다.

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동향”을 “같은 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병력신고서(제1종 대형·특수·소형면허 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한다)
- 2의2. 질병·신체에 관한 신고서(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경우만 해당한다)
3.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제53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64조제2항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 교육용 자동차가 각각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1명 이상

제65조제1항제2호가목 중 “행정안전부령이”를 “행정안전부령으로”로,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3시간”을 “4시간”으로 한다.

별표 5의 제2호 중 “설치하되, 전문학원의 경우 사무실의 면적은 99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”을 “설치할 것”으로 한다.

별표 5의 제7호가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목 단서 중 “기능교육장을”을 “전문학원이 기능교육장을”로 한다.

면적이 350제곱미터 이상(전문학원의 경우에는 6,600제곱미터 이상)인 기능교육장을 갖출 것.

별표 5의 제7호나목(1) 중 “3,000제곱미터”를 “8,250제곱미터(전문학원의 경우에는 2,000제곱미터)”로 한다.

별표 5의 제7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기능교육장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하고, 가목에 해당하는 기능교육장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- 1) 차로 폭이 3미터 이상인 1개 이상의 차로를 설치할 것
- 2) 10 ~ 15센티미터 너비의 중앙선 또는 차선을 표시하고, 도로 중앙으로부터 3미터 되는 지점에 10 ~ 15센티미터 너비의 길가장자리선을 설치할 것
- 3) 연석은 길가장자리선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간격으로 높이 10센티미터 이상, 너비 1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

별표 5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정비장 및 주차시설

가. 교육용 자동차의 일상점검에 필요한 정비장을 갖출 것

나. 포장된 주차시설을 갖출 것

별표 5의 제9호다목(2) 중 “최대의 자동차 대수”를 “최대의 자동차 대수의 3배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4조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1일 교육시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)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◇개정이유

자동차운전면허의 취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, 자동차운전학원 등에서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1일 최대 교육시간을 연장하며,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의 면적을 6,600제곱미터에서 350제곱미터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◇주요내용

가.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 확대 등(안 제45조 및 제53조)

- 1)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(전국 1,887개소)으로 한정되어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 발급기관을 모든 병원·의원으로 확대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증대함.
- 2)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제2종 운전면허와 같이 시력검사만 실시하고, 색채식별능력이나 신체장애에 따른 운동능력 등은 응시자의 질병·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함.

나.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 1일 교육시간 연장(안 제65조)

자동차운전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1일 최대 교육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하여 운전교육에 걸리는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함.

다.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면적 축소 등(안 별표 5)

- 1) 자동차운전학원이 갖추어야 하는 기능교육장의 면적을 6,600제곱미터에서 350제곱미터로 축소(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제외)하여 자동차운전학원 설립기준을 완화함.
- 2) 도로주행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1 : 1로 규정하고 있는 기능교육용 자동차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비율을 1 : 3으로 조정함. <법제처 제공>

부 령

●행정안전부령 제213호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1년 4월 30일

행정안전부장관 인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제1항 본문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제2종 운전면허시험”을 “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”으로 한다.

제59조제1항 중 “영 제45조제2항”을 “영 제45조제2항제1호”로 한다.

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9조의2(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판정)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적성은 별지 제42호의2서식 뒤쪽의 질병·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판정한다.